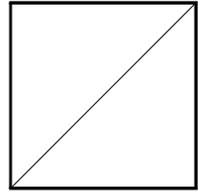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1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서민금융진흥원
2021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서민금융진흥원이 승인을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예산 편성 · 심의 기본방향

-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산은 대출·보증사업에 수반되는 **재원조성(수입)·사업예산(지출)**과, **사업수입(수입)·운영비용(지출)**으로 구분하여 편성

- 2021년 업무계획서상 서민금융공급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예산 및 사업수입 편성**

※ 2021년도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 상 **서민금융 공급목표**는 추후 '경제정책 방향'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그 중, **운영비용예산**(인건비, 경상경비, 사업지원비 등)은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 예산안

(1) 재원조성 및 사업예산

- **(재원조성) 2021년도 11,585억 원 계획**

* 휴면예금 출연금 3,763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202억 원, 복권기금 출연금 등 2,527억 원, 일반기부금 2억 원, 대출금 회수 959억 원, 구상채권회수 1,132억 원

- **(사업예산) 2021년도 8,400억 원 계획**

* 원권리자 지급 1,674억 원, 미소금융 대출지원금 1,446억 원, 대위변제금 5,280억 원

(2) 사업수입 및 운영비용

○ (사업수입) 2021년도 1,184억 원 계획

* 이자수익 379억 원, 보증료수입 700억 원, 맞춤대출 알선수수료 45억 원 등

○ (운영비용)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심의 결과, 2021년도 예산은 691억 원 계획

※ 운영비용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당초 '20년 예산 550억 원보다 277억 원 (50.4%) 증가한 827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 소관과 검토 및 경영예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36억 원을 삭감(증가한 요청금액 277억 원 대비 △103.7%)하여 691억 원의 예산을 상정하고자 함
- 동 예산은 '20년 대비 25.6% 증액(141억 원)된 금액으로 인력증가(280→297명(+17명), 6.1%↑) 및 청년인턴 채용(30명), 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전 개소, 서금원 본사 추가 사무실(1개층) 임차, 차세대 전산개발 잔금 반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를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는 전액 삭감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 2021년 서민금융진흥원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내역(안) >

(단위 : 억 원)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재원 조성	휴면예금 출연	3,763	사업 예산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	1,674
	금융회사 출연	3,202		지역법인 대출지원	896
	복권기금 등 출연	2,527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지원	100
	일반기부금	2		전통시장 대출지원	450
	대출금회수	959		대위변제금	5,280
	구상채권회수	1,132		소 계	8,400
	소 계	11,585			
사업 수입	이자수익	379	운영 비용	총인건비	158
	보증료	700		경상경비	178
	알선수수료	45		퇴직급여충당금	16
	기금관리비	60		정원외직원 인건비	4
				기타경비예산	175
				자본예산	119
				예비비	41
소 계	1,184	소 계	691		
합 계	12,769	합 계	9,091		

□ 운영비용 세부항목별 예산안 내역

- 총인건비 : 158억 원 ('20년 157억 원 대비 1억 원(0.9% 증가))
- 경상경비 : 178억 원 ('20년 158억 원 대비 20억 원(12.6%) 증가)
- 퇴직급여충당금 : 16억 원 ('20년 14억 원 대비 2억 원(13.9%) 증가)
- 정원외직원 인건비 : 4.2억 원 ('20년 0.6억 원 대비 3.6억 원(590.2%) 증가)
* 최저임금 인상(8,590원 → 8,720원) 및 청년인턴 채용(30명) 관련 인건비 반영
- 기타 경비예산 : 175억 원 ('20년 157억 원 대비 18억 원(11.7%) 증가)
* 교육사업비, 서민금융사업비, 소액보험사업비, 신용보증사업비, 자활사업비 등 포함
- 자본예산 : 119억 원 ('20년 37억 원 대비 82억 원(220.0%) 증가)
* '19년 차세대 전산개발 구축비용 187억 원 중 잔금 73억 원(40%) 및 IFRS시스템 개발 비용 등 반영
- 예비비 : 40.8억 원 ('20년 41억 원 대비 △0.2억 원(△0.5%) 감소)
* 인력증원 및 육아휴직대체 인건비 등을 예비비로 편성

< 2021년 서민금융진흥원 운영비용 예산 내역(안)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대비	
		요청액 (B)	경예심 심의결과 (C)	요청액대비 증감액 (C-A)	증감액 (D=C-A)	증감률 (D/A)
총인건비	15,697*	15,838	15,838	0	141	0.9%
경상경비	15,786	23,800	17,772	△6,028	1,986	12.6%
사내복지기금 출연	-	-	-	-	-	-
퇴직급여충당금	1,379	1,571	1,571	0	192	13.9%
정원외직원 인건비	61	484	421	△63	360	590.2%
기타 경비예산	15,680	19,796	17,512	△2,284	1,832	11.7%
자본예산	3,709	16,027	11,870	△4,157	8,161	220.0%
예비비	4,095	5,190	4,075	△1,115	△20	△0.5%
합 계	54,985	82,706	69,059	△13,647	14,074	25.6%

* '20년 인원 증가분 +1,422백만 원 반영하여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고, 총예산액에서는 제외

< 별지 :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총칙(안) >

4. 참고사항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서금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금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서금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결산) ① 서금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서금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서금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금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총칙

제1조(목적) 이 총칙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서금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수익과 비용은 예산에 편입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근거) 예산은 2021년도 서금원 업무계획에 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금융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한다.

제4조(구분처리) ① 예산은 서금원 고유계정과 휴면예금관리계정, 기부금계정, 신용보증계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예산은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로 재원조성·사업예산 및 사업수입·운영비용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다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사업예산과 운영비용 예산은 각 계정별로 직접 대응하되, 운영비용 중 공통비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안분기준을 통해 각 계정에 구분하여 계상한다.

1. 각 계정별 전년도 결산 안분비율
2. 각 계정별 전년도 기본재산 규모비율

④ 운영비용 중 자산운영 예산은 각 계정별로 직접 대응하되, 공통 자산운영 예산은 제3항의 안분기준을 통해 각 계정에 구분하여 계상한다.

제5조(예산내역) 2021년도 서금원의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 원)

구 분	수입예산(A)	지출예산(B)	차이 (A-B)
재원조성·사업예산	11,585	8,400	3,185
사업수입·운영비용	1,184	691	493
합 계	12,769	9,091	3,678

*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대위변제준비비, 구상채권상각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 8,342.6억 원은 미반영

제6조(예산명세) 2021년도 서금원의 예산명세는 “별표 1, 2”와 같다.

제7조(예산정원) 2021년도 직급별 예산 계획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예산변경)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무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자금사정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서금원의 원장은(이하 “원장”이라 한다) 항간 예산금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은 각 계정 예산의 총규모 범위에서 목간 예산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인사관련 예비비(정현원차, 성과, 증원 예비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단, 일반예비비는 일반관리비의 2% 이내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예비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④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외) ① 수입 또는 수익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예산을 초과해 지출 또는 비용 처리될 경우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은 처리결과를 해당연도 결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증금, 공탁금 등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상되는 지출액
2. 퇴직급여(퇴직연금)
3. 세금과공과, 법인세비용, 등기소송비용, 보험료, 위탁수수료
4.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구상채권상각비, 대위변제준비비, 대손상각비
5.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공탁금 및 제충당금전입액
6.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7. 기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제12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서금원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집행기간) 2021년도 예산의 집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서민금융진흥원 예산명세

1. 재원조성 및 사업예산(안)

2021년도 +3,185억 원 편성 (전년대비 3,848억 원 증액, 580.4% ↑)

□ (재원조성) 2021년도 11,585억 원 계획(전년대비 +3,561억원, 44.4% ↑)

□ (사업예산) 2021년도 8,400억 원 계획(전년대비 △287억원, 3.3% ↓)

(단위 : 억 원)

구 분	2021년					2020년			
	휴면예금	기부금	신용보증	고유	계 (A)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기초 잔액 (A)	18,467	221	6,329	203	25,220	-	-	-	
재원 조성	출연금	3,763	-	3,202	-	6,965	4,348	2,617	60.2%
	출자금	-	-	-	-	-	-	-	-
	복권기금 등	-	-	2,527 ¹⁾	-	2,527	1,905	622	32.7%
	지정기부금	-	-	-	-	-	-	-	-
	일반기부금	-	2	-	-	2	2	-	0.0%
	대출금회수	80	879	-	-	959	979	△20	△2.0%
	구상채권회수	-	-	1,132	-	1,132	790	342	43.3%
	소 계 (B)	3,843	881	6,861	-	11,585	8,024	3,561	44.4%
사업 예산	원권리자 지급	1,674	-	-	-	1,674	1,567	107	6.8%
	지역법인 대출지원	-	896	-	-	896	1,300	△404	△31.1%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지원	100	-	-	-	100	100	-	0.0%
	전통시장 대출지원	450	-	-	-	450	500	△50	△10.0%
	지정기부금 지원	-	-	-	-	-	-	-	-
	대위변제금	-	-	5,280	-	5,280	5,220	60	1.1%
	소 계 (C)	2,224	896	5,280	-	8,400	8,687	△287	△3.3%
총 계 (D=B-C)	1,619	△15	1,581	-	3,185	△663	3,848	580.4%	
기말 잔액 (A+D)	20,086	206	7,910	203	28,405	-	-	-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이관받는 햇살론 I 집행잔액 577억 원 포함

2) '21년 당기순손실 7,699억 원 예상

2. 사업수입 및 운영비용(안)

2021년도 **+493억원** 편성 (전년대비 21억 원 증액, 4.5% ↑)

- (사업수입) 2021년도 1,184억 원 계획(전년대비 +162억 원, 15.9% ↑)
- (운영비용) 2021년도 691억 원 계획(전년대비 +141억 원, 25.6% ↑)

(단위 : 억 원)

구 분	2021년 (A)	2020년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사업수입	이자수익	379 ¹⁾	417	△38	△9.1%
	보증료	700	539	161	29.9%
	알선수수료	45	36	9	25.0%
	기금관리비	60	30	30	100.0%
	소 계(A)	1,184	1,022	162	15.9%
운영비용	총인건비	158.4	156.9 ²⁾	1.5	0.9%
	경비예산	177.7	157.9	19.8	12.5%
	퇴직급여충당금	15.7	13.8	1.9	13.8%
	정원외직원 인건비	4.2	0.6	3.6	600.0%
	기타 경비예산	175.1	156.8	18.3	11.7%
	자본예산	118.7	37.1	81.6	220.0%
	예비비	40.8	40.9	△0.1	△0.5%
	소 계(B)	690.6	549.9	140.7	25.6%
총 계(A-B)	493.4	472.1	21.3	4.5%	

- 1) 휴면예금(보험금)계정 284억 원 기부금계정 5억 원 신용보증계정 87억 원 고유계정 3억 원
- 2) '20년 인원 증가분 +1,422백만 원 반영하여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고, 총예산액에서는 제외
- 3)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8,342.6억 원 미포함(대손상각비 110.9억 원, 구상채권상각비 3,484.3억 원, 대위변제준비비 4,685.1억 원, 대지급금상각비 1.2억 원, 감가상각비 32.1억 원, 무형고정자산상각비 17.6억 원, 위탁운용수수료 및 이자비용 11.4억 원)

□ [참고] 자본예산 중 전산비품 내 차세대 전산개발 관련

- '19년도 예산승인 시 차세대 전산개발을 위해 필요예산 총 187억원을 2개년 계속비로 승인받음(1차년도 60%, 2차년도 40% 반영)
- 그러나, 조달청 지시로 구매-용역 분리발주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일정이 지연
 - '19년 미집행 잔액 예산 73억원은 '20년 예산으로 이월하되 '21년 예산으로 나머지 잔금 73억원(40%)을 편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은 당초 2개년('19~'20년)에서 3개년('19~'21년)으로 변경

(별표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심의기준에 따른 재분류

(단위 : 백만 원)

구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안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I. 총인건비	15,697*	15,838	141	0.9%
1. 인건비	15,579	15,717	138	0.9%
(임원)	613	619	6	0.9%
(직원)	14,966	15,098	132	0.9%
2. 급여성 복리후생비	117	121	4	3.4%
II. 경상경비	15,786	17,772	1,986	12.5%
1. 복리후생비(비급여)	1,585	1,920	335	21.1%
2. 업무추진비	157	149	△8	△5.0%
3. 교육훈련비	323	365	42	13.0%
4. 국외여비	10	10	0	0.0%
5. 기타 경상경비	13,711	15,328	1,617	11.8%
III.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	-	-	-
IV. 퇴직급여충당금	1,379	1,571	192	13.8%
V. 정원외직원 인건비	61	421	360	600.0%
VI. 기타 경비예산	15,680	17,512	1,832	11.7%
VII. 자본예산	3,709	11,870	8,161	220.0%
1. 직원사택 관련	241	240	△1	△0.4%
2. 대학생학자금 관련	-	-	-	-
3. 기타 자본예산	3,468	11,630	8,162	235.4%
VIII. 예비비	4,095	4,075	△20	△0.5%
1. 성과급 예비비**	916	1,287	371	40.5%
2. 인력증원 예비비	1,659	1,229	△430	△25.9%
3. 육아휴직대체 예비비	137	138	1	0.6%
4. 파견직전환 예비비	-	-	-	-
5. 일반(사업) 예비비	1,383	1,421	38	2.7%
IX. 총예산	54,985	69,059	14,074	25.6%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예산)	31,466	35,284	3,818	12.1%

* '20년 인원 증가분 +1,422백만 원 반영하여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고, 총예산액에서는 제외

**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 및 증감률은 차이가 발생

(별표 3) 2021년도 직급별 예산 계획인원

임원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감사	부원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021년	7	1	1	1	1	3
2020년	7	1	1	1	1	3
증감	-	-	-	-	-	-

별정직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직	
		본부장	상담직
2021년	32	2	30
2020년	29	2	27
증감	+3	-	+3

일반직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21년	188	6	12	30	54	86	-
2020년	162	6	12	27	45	72	-
증감	+26	-	-	+3	+9	+14	-

계약직

(단위 : 명)

구분	계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2021년	85	85	-
2020년	82	82	-
증감	+3	+3	-

* 육아휴직대체자 및 2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은 정원에서 제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관부서	서민금융과	기획조정부
연 락 처	02-2100-2614	02-2128-8015